

## 지역별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분석

### Analysis of Extra Costs among the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by Local

임재현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

Jae-Hyun Lim(jaehyun@paran.com)

####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 자료 결합하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타났다. 두 집단 평균비교(t-test) 결과,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으로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및 장애인 1인당 예산 증액 셋째, 추가비용 항목에 따른 추가비용 지출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심어 : | 추가비용 | 지역별 차이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basis of cash wages calculation of the extra cost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local differences of the extra costs of households with the disabled. It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average population by combining the ‘2011 Survey on disability’ and the ‘2011 municipal budget with disabilities’ to analyze the local difference of the extra costs. The highest region of the extra costs was Incheon, and the highest region of the extra cost preservation was Seoul. The highest region of the disabled budget rate was Daejeon, and the highest region of the disabled per capita budget was Jeju. According to a independent two sample t-test, the disabled budget rate and per capita budget of the highest regions of the extra cost preservation were higher than the lowest regions of the extra cost preservation. With policy proposals first, the increase in cash wages of the extra cost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increase the disabled budget and per capita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s third, the plan for a decrease of the extra costs according to the extra cost items of local.

■ keyword : | Extra Costs of Disability | Local Difference | Pension for the Disabled | Disability Allowance |

\*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NRF-2013S1A5B5A07047775).

접수일자 : 2016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9월 02일

수정일자 : 2016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임재현, e-mail : jaehyun@paran.com

## I. 서론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extra cost)은 무료 혹은 일부 재정적 보조를 받고도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또는 이러한 욕구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입, 그리고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장애인이 경험하게 되는 박탈의 정도를 의미한다[1-3].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저소득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아동수당이 있다. 장애인연금제도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대상에 제한이 있고, 기초급여액도 이전의 장애수당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고, 부가급여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장애인가구의 낮은 소득을 대체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4]. 또한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의 추가비용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추가비용은 장애인가구가 장애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생활비용인데 장애인가구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다만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고려한 연구들이 있다. 삶의 수준 접근법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이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비장애인가구와의 삶의 수준을 비교하는 추가비용계측 방식이다.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 저축유무 등의 가구 재정상황 등의 복합문항, 일상적 사회활동 참여 등의 생활여건을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여건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지역변수이다[5].

윤상용[1]의 연구에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은 서울시 208.23천원, 중·소도시 156.28천원, 광역시 148.05천원, 읍면지역 118.69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도 전국에 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이 2배 이상 더 높았다[2]. 삶의 수준 접근법을 활용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계측 연구에서도 거주지역이 생활여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한 빈곤측정에서도 지역의 생활비용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의 빈곤 규모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8]. 외국 선행연구에서도 삶의 수준 접근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추정에서 지역변수가 삶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12].

현재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인가구의 감소된 소득과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수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추가적 지원을 하고 있다[13].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14], 광주시민 복지기준 설정 연구에서도 장애인 생활지원금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2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15]. 그리고 충청남도과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기준선 설정을 통해서 장애인소득보장 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들은 추가비용 계측에서 지역을 하나의 변수로만 고려할 뿐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추가비용 연구에서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진행된 연구는 서울시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임재현[2]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연구하여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급여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 지원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16개 시·도별로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산과 장애수당의 추가비용 보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급여액 산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첫째, 장애인가구 추가비용,

가구소득, 장애수당의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둘째, 추가비용의 항목별로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지역별로 어떤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과 추가비용 보전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이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지역별로 추가비용의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가구의 장애수당 금액을 추가비용 지출에서 공제한 추가비용 보전과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예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과 지역

추가비용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추가비용을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장애를 가짐으로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지출로서 '직접비용' 둘째, 직접적인 비용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래의 비용 즉, 장애인들이 장애 때문에 갖게 되는 경험과 보호 및 치료를 제공받는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되는 잠재적 수입의 손실과 같은 '기회비용' 셋째, 많은 장애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밖의 생활비용과 관계된 것으로 '추가 생활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16].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병원치료, 지역사회 보호, 휠체어 등과 같은 보조기구 구입, 주거시설의 개조, 전문서비스 이용 등이고, 추가 생활비용은 식비와 주거비 등과 같은 필수항목의 경우 장애가 없는 상태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의미한다[5].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은 장애인의 생활여건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가구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추가비용 연구가 삶의 수준 접근방식이다. 삶의 수준 접근방식(Standard of Living Approach)은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을 동일하게 놓고, 그 삶의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추정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다[7]. 삶의 수준 척도는 단순히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지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내구재의 소유여부, 저축유무, 주관적 경제상태, 생활여건을 나타내는 복합지표 및 박탈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2][5-7][11][17].

또한, 장애인가구는 장애가 발생한 가구원으로 인해 가구의 소비패턴에 변화가 발생한다. 즉 장애발생 이후 가구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는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예를 들면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보호 간병비, 교통비 등에서 새로운 항목의 추가적 지출이 발생하게 되며[6][18][19], 이러한 추가비용은 식비, 주거비 등의 다른 지출 항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장애발생 이후 장애인가구에서 주거비와 식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와 식비를 포함한 지출은 장애발생 이후 25%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식비도 1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소비패턴 변화는 한정된 수입에서 장애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지출을 추가비용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추가비용 지출로 인해서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이 장애발생 이전보다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2][17].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은 삶의 수준을 저하시키면서 장애인가구의 생활여건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생활여건의 변화는 장애인의 생활기반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서울시의 경우 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생활물가지수는 더욱 높아져 소비자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게 되며,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추가비용은 57.32만원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결과는 임재현[5]과 이선우[7]의 연구 결과보다 약 3배 더 많은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이 지역별 생활여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추가비용과 지역에 관한 선행연구

추가비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추가비용에 미치는 영향요인들 중에서 지역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윤상용[1]은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하였는데, 지역변수가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 지역별 추가비용의 수준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비용 분석에 지역의 생활여건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결과이다.

임재현[2]은 서울시의 추가비용을 계측하면서 삶의 수준 점수를 활용하였는데, 서울시는 다른 연구들과 비교해 많은 추가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재현[5]은 장애인가구의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장애인가구여부, 가구소득, 지역, 자가여부, 가구주 연령, 아동 수로 나타났다.

이선우[6]는 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추가비용을 계측하면서 생활여건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소득, 지역, 자녀 수, 가구원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선우[7]는 장애인가구의 빈곤을 비장애인가구와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하면서 삶의 수준에 따른 추가비용을 계측하여 빈곤율에 반영하여 분석하였는데,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가구소득, 지역, 자가 여부, 가구주 연령, 성별, 아동 수로 나타났다.

Jones and O'Donnell[9]은 장애인가구의 균등화지수와 추가비용 연구에서 연료비, 교통비, 의류 및 식비 등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구지출, 장애유형, 가구주 연령, 성별, 주거점유형태, 지역으로 나타났다.

Indecon[10]은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추정에서 삶의 수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 장애인 가구 여부, 주거점유형태, 지역, 성별, 가구 구성원, 가구주 연령으로 나타났다.

Zaidi and Burchardt[11]은 삶의 수준 접근법을 활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삶의 수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구소득, 장애정도, 연령, 지역, 주거점유형태, 아동의 수와 연령으로 나타났다.

Cullinan, Gannon and Lyons[12]은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을 삶의 수준 접근법으로 추정하면서 삶의 수준 지수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장애인가구여부, 가구소득, 가구규모, 주거점유형태, 지역, 아동의 수, 가구주 연령과 성별, 결혼여부로 나타났다.

표 1. 추가비용 영향요인

| 선행연구                           | 추가비용 영향요인  |
|--------------------------------|--|
| 윤상용[1]                         | 바텔인덱스, 가구소득, 개인소득, 장애유형, 장애 등급                           |
| 임재현[2]                         | 장애인가구여부, 가구소득, 자가여부,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
| 임재현[5]                         | 장애인가구여부, 가구소득, 지역, 자가여부, 가구주연령, 아동 수                     |
| 이선우[6]                         |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구소득, 지역, 자녀 수, 가구원 수                        |
| 이선우[7]                         | 가구소득, 지역, 자가여부, 가구주 연령, 성별, 아동 수                         |
| Jones and O'Donnell[9]         | 가구지출, 장애유형, 가구주 연령, 성별, 주거점유형태, 지역                       |
| Indecon[10]                    |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여부, 주거점유형태, 지역, 성별, 가구 구성원, 가구주 연령           |
| Zaidi and Burchardt [11]       | 가구소득, 장애정도, 연령, 지역, 주거점유형태, 아동의 수와 연령                    |
| Cullinan, Gannon and Lyons[12] | 장애인가구여부, 가구소득, 가구규모, 주거점유형태, 지역, 아동의 수, 가구주 연령과 성별, 결혼여부 |

위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지역변수가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외의 모든 연구들이 지역별로 추가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지만,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에 따른 추가비용의 차이만 제시할 뿐 지역별 추가비용에 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연구에서 임재현[5], 이선우[6], 이선우[7]는 서울시, 광역시, 시(중소도시), 군(읍면)으로 지역변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지역변수의 설정은 장애인복지정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한 연구는 한국장애인총연맹에서 2005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연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추가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시·도별 장애인연금 및 수당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즉, 시·도별 추가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은 없지만, 장애인연금에 부가급여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어서 시·도별 추가비용 보전에 대한 사항을 제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는 200개 조사지역 47,458대상 가구 중 38,231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중 6,010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경제상태 조사에서 장애인과 장애인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지출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조사되어 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9가지 항목으로 교통비, 의료비,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부모사후대비용, 기타(주택개조비용 등) 등이 있다[21].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에 대한 자료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백서』 [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예산총액, 장애인예산총액, 장애인예산비율, 자체예산, 등록 장애인수, 장애인 1인당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과 관련된 모든 항목이 조사되어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을 분석한 유일한 자료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예산백서 자료뿐이기 때문이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가 16개 시·도별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조사되었기에 지역을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해당 조사기간에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편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16개 지역의 평균값을 집단별 평균비교 분석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통계치는 분산분석의 F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의 사후분석 Tukey HSD와

Duncan의 동일집단군을 참조하여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예산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집단비교 통계분석은 t-test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자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자료를 병합하여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추가비용, 가구소득, 장애수당의 지역별 차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 여부의 응답에서 전체 6,055가구 중에서 4,362가구(72.0%)가 추가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하였다. 추가비용지출이 있는 4,362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월평균 추가비용 지출 평균은 16만 6백 4십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월평균 추가비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광역시로 나타났다. 월평균 추가비용의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지역은 인천과 제주를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였다.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도 월평균 추가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의 지역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북도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추가비용 지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상관관계계수(Pearson r)는 0.2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이는 추가비용 지출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는 있으나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추가비용 지출은 대전광역시 다음으로 낮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비용지출이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높았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평균 이하에 있지만 추가비용 지출이 평균보다 높은 지역도 있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와 같이 월평균 가구소득이 평균 이상이지만 추가비용 지출은 평균 이하인 지역도 있다. 따라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으면 추가비용 지출이 증가하긴 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비용 지출은 월평균 가구소득 이외에도 지역과 같은 또 다른 변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추가비용, 가구소득, 장애수당의 지역별 차이

| 구분                            | N    | 월평균<br>추가비용<br>(천원) | 월평균<br>가구소득<br>(만원) | 장애인연<br>금·장애<br>수당 (A) | 장애아동<br>수당 (B) | 합산장애<br>수당<br>(C= A+B) |
|-------------------------------|------|---------------------|---------------------|------------------------|----------------|------------------------|
| 서울                            | 785  | 184.92              | 181.81              | 11.51                  | 18.43          | 12.90                  |
| 부산                            | 297  | 160.97              | 200.20              | 9.11                   | 21.96          | 10.03                  |
| 대구                            | 182  | 119.52              | 173.25              | 9.32                   | 12.89          | 9.55                   |
| 인천                            | 233  | 276.20              | 334.31              | 7.94                   | -              | 7.94                   |
| 광주                            | 126  | 201.96              | 217.07              | 8.44                   | 15.00          | 8.94                   |
| 대전                            | 99   | 100.47              | 208.73              | 9.25                   | 12.24          | 9.41                   |
| 울산                            | 70   | 106.96              | 367.97              | 8.86                   | -              | 8.86                   |
| 경기                            | 797  | 168.49              | 224.25              | 8.02                   | 16.92          | 8.81                   |
| 강원                            | 191  | 138.95              | 142.16              | 7.02                   | 12.90          | 7.25                   |
| 충북                            | 180  | 121.35              | 204.79              | 8.79                   | 13.21          | 9.05                   |
| 충남                            | 260  | 149.18              | 174.54              | 7.62                   | 19.57          | 9.72                   |
| 전북                            | 264  | 127.18              | 136.80              | 8.56                   | 10.00          | 8.57                   |
| 전남                            | 208  | 115.35              | 175.87              | 9.95                   | 13.99          | 10.49                  |
| 경북                            | 301  | 147.53              | 169.68              | 8.33                   | 20.00          | 8.91                   |
| 경남                            | 310  | 129.23              | 174.35              | 9.07                   | 11.85          | 9.24                   |
| 제주                            | 61   | 256.01              | 172.89              | 6.76                   | 18.26          | 9.79                   |
| 합계                            | 4362 | 160.64              | 197.51              | 9.29                   | 17.25          | 10.08                  |
| 평균<br>비교                      | F    | 2.560**             | 21.409***           | 2.888***               | .632           | 3.942***               |
| 추가비용과의<br>상관관계(Pear<br>son r) |      |                     | .221**              | .051                   | -.291**        | .036                   |

\*\*\* p<.001 \*\* p<.01

장애인가구 중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수급하는 가구는 1,164가구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9만 2천 9백원이었으며,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구는 78가구로 월 평균 수급액은 17만 2천 5백원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지출이 있는 장애인가구 중에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가구는 1,206가구였으며, 합산장애수당의 평균 금액은 10만 8백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부분 약 8~9만원 수준

에 머무르지만, 서울특별시 12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합산장애수당 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과 장애수당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장애아동수당뿐으로 장애인연금·장애수당과 합산장애수당 금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장애수당이 추가비용 지출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추가비용 지출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비용 지출을 보전하기에 장애수당이 턱없이 낮은 급여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지출항목별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항목별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교통비의 경우 충청남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의료비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청북도였다. 보육·교육비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였으며, 보호·간병비는 부산광역시와 가장 높았으며, 재활기관 이용료는 광주광역시, 통신비는 울산광역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유지비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모사후 대비비는 전라남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항목별로 지역별 평균값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교통비, 의료비, 재활기관이용료, 통신비, 보조기구 구입비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육비, 보호·간병비, 부모사후 대비비였다.

## 3. 지역별 장애인예산과 추가비용 보전의 관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제도의 추가비용 보전에 대한 정부의 지원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실태 조사를 비롯하여 어떠한 통계자료도 추가비용 보전 즉, 부가급여에 대한 조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수당 금액이 추가비용을 얼마나 보전하는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장애수당 금액에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표 3. 추가비용의 항목별로 지역별 차이검정

(단위: 천원)

| 구분    | N    | 교통비   | 의료비   | 보육·<br>교육비 | 보훈·<br>간병비 | 재활기관<br>이용료 | 통신비   | 보조기구<br>구입비 | 부모사후<br>대비비 |
|-------|------|-------|-------|------------|------------|-------------|-------|-------------|-------------|
| 서울    | 785  | 21.98 | 57.41 | 7.50       | 16.78      | 1.12        | 8.49  | 53.52       | 6.24        |
| 부산    | 297  | 25.82 | 67.68 | 6.63       | 27.44      | 0.30        | 9.19  | 7.36        | 7.27        |
| 대구    | 182  | 12.58 | 50.88 | 1.61       | 13.53      | 2.21        | 7.72  | 16.51       | 8.77        |
| 인천    | 233  | 23.78 | 84.43 | 13.34      | 26.23      | 2.01        | 11.11 | 40.91       | 8.31        |
| 광주    | 126  | 23.93 | 77.03 | 1.41       | 14.36      | 9.89        | 11.17 | 59.65       | 3.11        |
| 대전    | 99   | 19.12 | 43.22 | 4.63       | 4.14       | -           | 8.07  | 6.63        | 6.33        |
| 울산    | 70   | 10.73 | 41.73 | -          | 3.45       | -           | 15.82 | 23.34       | 7.69        |
| 경기    | 797  | 25.40 | 67.29 | 8.07       | 18.32      | 1.79        | 10.10 | 28.04       | 4.24        |
| 강원    | 191  | 16.75 | 46.18 | 4.82       | 10.53      | 1.80        | 8.91  | 34.07       | 2.88        |
| 충북    | 180  | 29.64 | 36.05 | 7.89       | 1.39       | 2.28        | 9.99  | 31.63       | 1.21        |
| 충남    | 260  | 36.67 | 74.76 | 4.62       | 7.80       | 0.13        | 8.12  | 11.61       | 0.40        |
| 전북    | 264  | 16.45 | 51.14 | 0.84       | 6.40       | 0.83        | 7.87  | 23.97       | 1.48        |
| 전남    | 208  | 19.61 | 39.40 | 6.59       | 10.61      | 1.88        | 12.26 | 12.28       | 11.92       |
| 경북    | 301  | 15.26 | 36.66 | 6.17       | 5.34       | 6.92        | 10.29 | 54.96       | 6.68        |
| 경남    | 310  | 24.95 | 43.17 | 2.50       | 14.17      | 1.14        | 10.34 | 5.95        | 6.91        |
| 제주    | 61   | 36.24 | 38.01 | 4.10       | 3.83       | 2.65        | 12.47 | 115.55      | 2.62        |
| 합계    | 4362 | 22.84 | 56.78 | 6.03       | 14.06      | 1.95        | 9.64  | 31.72       | 5.40        |
| 평균 비교 | F    | 4.041 | 2.503 | .680       | 1.376      | 2.421       | 2.166 | 1.742       | 1.490       |
|       | P    | .000  | .001  | .806       | .149       | .002        | .006  | .037        | .100        |

장애인가구별로 월평균 추가비용에서 합산장애수당 금액을 빼서 추가비용 차액을 계산한 후 추가비용에서 추가비용 차액을 빼서 추가비용 보전으로 명명하였다. 추가비용 보전의 전국 평균값은 27.9천원이었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광역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충청남도과 강원도가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광역시는 추가비용 보전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장애인 예산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대구광역시는 추가비용 보전이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

인당 예산이 가장 높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비용 보전이 다섯 번째로 높았으나 경상북도는 세 번째로 높았으며, 대구광역시는 네 번째로 높았고, 대전광역시는 두 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낮았던 울산광역시는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낮았으며, 인천광역시는 추가비용 보전이 두 번째로 낮았는데 장애인 1인당 예산 또한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낮았다. 즉,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지역은 대체로 월평균 추가비용 지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추가비용 보전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높고, 장애인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낮게 나타나서 두 집단 구분에서 제외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가비용 보전은 높은 편이나 지자체 장애인예산 비율은 낮으면서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두 집단 구분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이 추가비용 지출이 낮았고,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은 추가비용 지출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추가비용 보전이 높으면서

추가비용 지출이 낮은 집단을 ‘높은 집단’, 추가비용 보전이 낮으면서 추가비용 지출이 높은 집단을 ‘낮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높은 집단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였으며, 낮은 집단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였다.

표 4. 지역별 추가비용 보전 및 장애인예산 (단위: 만원)

| 구분 | N    | 추가비용<br>차액<br>(D=추가<br>비용-C) | 추가비용<br>보전<br>(E=추가<br>비용-D) | 지자체<br>장애인<br>예산<br>비율(%) | 지자체<br>장애인<br>1인당<br>예산 |
|----|------|------------------------------|------------------------------|---------------------------|-------------------------|
| 서울 | 785  | 13.10                        | 5.39                         | 1.56                      | 30.74                   |
| 부산 | 297  | 14.12                        | 1.98                         | 4.93                      | 96.15                   |
| 대구 | 182  | 8.65                         | 3.30                         | 5.81                      | 105.33                  |
| 인천 | 233  | 26.14                        | 1.48                         | 4.79                      | 72.21                   |
| 광주 | 126  | 18.68                        | 1.52                         | 5.09                      | 86.70                   |
| 대전 | 99   | 6.40                         | 3.64                         | 6.66                      | 103.08                  |
| 울산 | 70   | 9.85                         | 0.84                         | 4.08                      | 68.40                   |
| 경기 | 797  | 15.17                        | 1.68                         | 2.55                      | 90.83                   |
| 강원 | 191  | 11.36                        | 2.53                         | 1.89                      | 91.79                   |
| 충북 | 180  | 10.19                        | 1.95                         | 2.82                      | 101.98                  |
| 충남 | 260  | 12.70                        | 2.22                         | 1.89                      | 98.35                   |
| 전북 | 264  | 10.11                        | 2.61                         | 1.97                      | 82.58                   |
| 전남 | 208  | 9.10                         | 2.44                         | 2.06                      | 94.26                   |
| 경북 | 301  | 11.44                        | 3.31                         | 2.51                      | 128.31                  |
| 경남 | 310  | 10.76                        | 2.16                         | 2.04                      | 111.01                  |
| 제주 | 61   | 22.80                        | 2.81                         | 1.97                      | 175.96                  |
| 합계 | 4362 | 13.28                        | 2.79                         | 2.82                      | 85.61                   |

이 두 집단의 장애인 예산을 비교하였다. 장애인 예산 비율의 경우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평균 4.25%였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은 평균 3.62%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지역일수록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지역에 비해 장애인 예산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의 경우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집단은 평균 116만원이었으며,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집단은 평균 8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추가비용 보전이 높은 지역일수록 추가비용 보전이 낮은 지역에 비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보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예산 비율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을 증액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보전과 장애인 1인당 예산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가비용 보전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1인당 예산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장애인예산의 두 집단 비교 (단위: %, 만원)

| 구분            | 추가비용<br>보전 | N     | 평균     | 표준편<br>차 | t        |
|---------------|------------|-------|--------|----------|----------|
| 장애인 예산<br>비율  | 높은 집단      | 581   | 4.25   | 2.39     | 5.89***  |
|               | 낮은 집단      | 1,452 | 3.62   | 1.49     |          |
| 장애인 1인당<br>예산 | 높은 집단      | 581   | 116.84 | 37.47    | 15.79*** |
|               | 낮은 집단      | 1,452 | 88.58  | 33.83    |          |

\*\*\* p<0.001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추가비용 급여액 산정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이유로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더 들기 때문이다. 즉,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이라는 새로운 지출요인으로 인해 빈곤에 더 취약하게 된다는 것이다[5].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추가비용 계측 연구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조차 빈곤연구에 활용되는 정도이다. 하지만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는 장애인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다만 추가비용 급여는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지원체도로 정부 예산의 사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급여수준 또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4].

지방자치단체별로 낮은 추가비용 급여를 보충하고자 추가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의 추가비용 급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술적 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가구 추가비용의 16개 시·도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서 그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유일한 연구이다. 어떤 연구에서도 추가비용의 지역별로 차이를 제시하거나 검증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지역별 차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로 추가비용 항목의 지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어떤 항목의 지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게 되면 지역별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결과에서 장애인 예산이 높은 지역일수록 추가비용 보전도 높게 나타난바와 같이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보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 예산의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결론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 보전 급여액의 증액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을 20만원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에 대한 보전을 추진하고 있다[14]. 현재 장애인연금에서 부가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상위 계층 7만원, 차상위 초과가 2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추가지원 금액은 부산광역시 3만원, 대구광역시 3만원, 인천광역시 6만원, 대전광역시 3만원, 광주광역시 2만원, 울산광역시 5만원이다[13].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비용 보전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장애인예산의 증액은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보전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예산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추가비용의 지출 항목에 따른 지역별 정책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3]과 비

교해 보면 장애인 1인당 의료비지원액이 낮은 지역이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의료비의 추가비용 보전과 감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보조기구 구입·유지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는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3]과 비교하면 보장구 의료급여실시비율과 보조기구 무료 보급수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조기구 구입·유지비의 추가지출 보전과 감소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교통비의 추가비용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청남도였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3]과 비교하면 저상버스 등 장애인 교통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교통비의 추가비용 보전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 지출과 추가비용 보전의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들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제도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급여산정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둘째, 장애수당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의 추가적 지원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2011년도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장애인실태조사의 추가비용과 지자체별 장애인예산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가 2011년도 자료뿐이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1] 윤상용,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제10권, 제3호, pp.65-89, 2006.
- [2] 임재현, “서울시 장애인가구의 추가비용에 관한 연구-삶의 수준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서울도시연구*, 제13권, 제4호, pp.205-220, 2012.
- [3] M. Tibble, *Review of existing research on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Working Paper No 21,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London, 2005.
- [4] 박은수, *장애인 소득보장론-장애인연금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나남, 2011.

- [5] 임재현, *장애인가구의 빈곤특성과 빈곤결정요인 연구-비장애인가구와 비교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6] 이선우, “장애인가구의 장애종류 및 장애정도별 추가비용 계측-삶의 수준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제32권, pp.7-26, 2008
- [7] 이선우,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따른 빈곤율 비교-삶의 수준 접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4호, pp.431-452, 2009.
- [8] 백학영,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9] A. Jones and O. O'Donnell, “Equivalence Scales and the costs of disab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56, No.2, pp.273-289, 1995.
- [10] Indecon, *Cost of disability research project report*,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Dublin, 2004.
- [11] A. Zaidi and T. Burchardt, “Comparing incomes when needs differ: Equivalization for the extra costs of disability in the UK,”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51, No.1, pp.89-114, 2005.
- [12] J. Cullinan, B. Cannon, and S. Lyons, *Estimating the Economic Cost of Disability in Ireland*, ESRI Working Paper No.230, 2008.
- [13] 김정득, 이영미, 김동기, 임재현,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대전복지재단, 2013.
- [14] 서울연구원, *서울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서울특별시, 2012.
- [15] 광주광역시, *광주시민 복지기준선 설정 연구*, 광주광역시, 2015.
- [16] 변용찬, 윤상용, 김태완, 이정선, *장애수당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17] R. Berthoud, J. Lakey, and S. McKay, *The Economic Problems of Disabled People*, London: Policy Study Institute, 1993.
- [18] T. Burchardt, *Being and becoming: social exclusion and onset of disability*. ESRC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Report 21, London School of Economics, 2003.
- [19] W. Kuklys, *Amartya Sen's Capability Approach: Theoretical Insights and Empirical Applications*, Berlin: Springer, 2005.
- [20] B. D. Meter and W. K. C. Mok, *Disability, Earnings, Income and Consumption*, The Harris School of Public Policy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06.10,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8.
- [21] 김성희, 변용찬, 손창균, 이연희, 이민경, 이승희, 강동욱, 권선진, 오혜경, 윤상용, 이선우, *2011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 [22]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백서*, 2011.
- [2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1년 전국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2011.

#### 저 자 소 개

#### 임 재 현(Jae-Hyun Lim)

#### 정희원



- 1999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소득보장, 사회복지법제